

<한국인도학회 편집규정>

1. 사단법인 한국인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인도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와 심사, 게재 등 편집과정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도학회 정관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한국인도학회 편집규정>을 둔다.
2. 『인도연구』 편집위원회는 학회장이 먼저 임원진과 협의하여 편집이사를 선임한 후, 다음으로 편집이사 및 임원진과 협의하여 전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편집이사가 그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공과 지역분포, 연구활동과 학회활동 참여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며, 인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데, 편집위원(장)이 임기 내에 자진사퇴를 원할 경우 외에는 임기와 편집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3. 『인도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인도 및 남아시아와 관련된 필자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물이어야 한다.
 - 1) 다른 학술지나 출간물에 게재되었거나 책으로 출판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같은 논문을 『인도연구』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2) 투고자의 학위논문을 단순 축약하거나 일부를 잘라서 재구성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용해서 별개의 독립된 논문을 작성한 경우는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투고논문의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서 학위논문 이용 사실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단계에서 대조와 확인을 위해 학위논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3)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투고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표절했거나 또는 다른 학술지나 책으로 출간된 사실 등을 비롯한 연

구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투고자에게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한국인도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결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한다. 이미 출간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필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며, 해당 논문은 게재를 취소한 후 전체 학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 『인도연구』에는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투고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이 투고를 원할 때는 투고 전에 신입회원 가입과 연회비 납부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 한다. 단,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5. 2016년의 『인도연구』 제21권 1호 편집 때부터 모든 투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받아 한국인도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편집(JAMS) 사이트(<https://jis.jams.or.kr/co/main/jmMain.kci>)에서만 접수한다. 투고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첫째, 투고논문이 <한국인도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서 작성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서약, 둘째, 『인도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과 이용권을 한국인도학회가 갖는다는 점에 동의, 셋째, 기타 필요 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투고논문 파일을 탑재해서 투고를 완료 한다. 매 호 원고마감일(1호 2월 말일, 2호 8월 31일) 자정까지 탑재가 완료된 논문만 해당 호 편집을 위해 접수할 수 있다. 단독논문이건 공동논문이건, 같은 호에 동일 필자가 2편 이상을 투고할 수 없다.
6. 『인도연구』에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서 심사하며,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익명으로 진행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할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각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아래 2)

항의 절차를 따른다.

- 2) 첫째, 『인도연구』의 기존 심사인력풀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연구자정보(KRI) 등에서 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투고논문의 연구주제를 심사하기에 적합한 연구자들로 논문당 5~6인의 심사위원 예비명단을 작성한다. 둘째, 심사위원 예비명단을 편집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검토한 후 각 편집위원이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셋째, 편집위원 전원의 추천 의견을 종합해서 다득표자 순서로 각 논문당 심사위원 3인을 확정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넷째, 심사를 거절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득표자 순서에 따라 대체해서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 투고논문을 심사할 전공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본인 논문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은 계재, 부분수정 후 계재, 전면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등 네 범주로 분류하여 평가하며, 심사보고서에는 수정과 보완을 제안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심사과정에서 표절이나 중복계재 등을 비롯한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발견한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 4) 심사의 주요 기준은 첫째, 연구주제와 내용의 적절성과 독창성, 둘째, 논지 전개의 논리성, 셋째,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 넷째, 논문 형식의 적절성 및 『인도연구』 <투고규정> 준수 여부 등이며, 각 심사위원들은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서 심사위원 관련 정보들을 삭제한 후 곧바로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전달해서, 심사위원의 비평이 논문 수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5)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계재’(계재 혹은 부분수정 후 계재) 평가를 받은 원고를 계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최종원고와 심사결

과 수용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사위원들이 제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투고자가 성의 있고 적절하게 수정과 보완을 했다고 판단될 때 계재를 최종결정한다. 최종원고 마감일까지 별도의 해명 없이 최종원고와 심사결과 수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재하지 않는다.

- 6) 심사 및 재심사를 완료한 결과 ‘계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또는 심사위원들의 수정 및 보완 제안과 지적을 투고자가 적절한 해명이나 반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계재하지 않는다.
- 7)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와 그에 따른 판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수정 없이 계재	B	B	B			부분수정 후 계재		
A	A	B	수정 없이 계재	B	B	C			부분수정 후 계재		
A	A	C	부분수정 후 계재	B	B	D			부분수정 후 계재		
A	A	D	부분수정 후 계재	B	C	C			전면수정 후 재심사		
A	B	B	부분수정 후 계재	B	C	D			전면수정 후 재심사		
A	B	C	부분수정 후 계재	B	D	D			계재 불가		
A	B	D	부분수정 후 계재	C	C	C			전면수정 후 재심사		
A	C	C	전면수정 후 재심사	C	C	D			전면수정 후 재심사		
A	C	D	전면수정 후 재심사	C	D	D			계재 불가		
A	D	D	계재 불가	D	D	D			계재 불가		

* A: 계재, B: 부분수정 후 계재, C: 전면수정 후 재심, D: 계재 불가

7. 편파적인 심사를 방지하고 투고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1차심사에서 탈락한 투고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투고자가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탈락이 최종결정된다.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들)의 재심사, 편집위원회 공동검토 및 의결 등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재심사 신청자격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1차심사에서 ‘계재 불가’(위 표에서 ‘전면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들)로 결정된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혹은 심사위원들의 수정 및 보완 제안과 요구에 불복하는 투고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1차심사의 심사보고서 3편 중 계재 불가가 2편 이상일 때는 탈락이 확정되기 때문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2) 재심사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재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재심사용 최종원고 및 심사보고서들에 대한 별도의 반론문(심사 결과 수용보고서)을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서류들을 1차심사 때 전면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들)에게 보내서 재심사의견을 받는다. 재심사의견은 ‘계재’ 혹은 ‘계재 불가’ 중 하나로 하며, 별도의 재심사보고서는 받지 않는다. 1차심사 때 계재 불가가 1편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 때도 이것을 계재 불가가 1편으로 간주하며, 심사위원 재심사를 마친 결과 계재 불가가 2편 이상일 때는 탈락이 확정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공동검토와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 재심사가 끝나 재심사의견이 모두 접수된 후, 편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심사 관련서류 일체(심사용 원고, 심사보고서 3편, 재심사용 최종원고, 심사결과 수용보고서, 재심사의견 등)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공동검토 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들에 편파적인 내용이나 부당한 판정이 있는지, 투고자가 원고 수정 때 심사평들을 성의 있고 적절하게 수용했는지, 심사평들에 대한 투고자의 반론과 해명이 타당한지 등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원고 수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4) 공동검토를 마친 후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이때는 편

집위원 각자의 의견을 ‘계재’ 혹은 ‘계재 불가’ 중 하나로 정해 제출하며, 계재 여부 최종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편집위원들과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 각자의 의견을 각각 1표씩으로 계산하는데, 1차심사 때 계재 불가가 1편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 때도 이 의견을 계재 불가 1표로 간주해서 함께 계산하며, 해당 심사위원에게는 별도의 재심사의견을 요청하지 않는다. ‘계재’와 ‘계재 불가’ 의견이 동수일 경우에는 재심사의견(들)에 따르며, 만약 재심사의견(들)도 ‘계재’와 ‘계재 불가’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8. 정상적인 심사 및 재심사과정을 거쳐 탈락한 논문, 혹은 원고 접수 후 심사과정을 마치지 않고 투고자가 스스로 투고를 철회한 논문 등은 바로 다음 호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다다음 호 이후에 투고할 때는 이전에 탈락 혹은 투고철회한 논문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접수하며, 원고접수 후 편집위원회는 과거에 심사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서 심사를 의뢰한다. 2회 탈락하거나 2회 투고철회, 혹은 1회 탈락과 1회 투고철회한 논문은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9. 계재가 결정된 논문들은 한글 논문, 영어 논문, 기타 외국어 논문 순서로 삽니다. 분야에 따라 사회과학, 인문학 순서로 삽되, 필자 이름의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에 따라 배열한다.
10. 공동논문에서 제1저자와 공동저자가 구분되는 경우 이를 논문 첫 쪽의 필자들 이름 뒤에 각주를 달아 명시한다. 각주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필자 모두를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1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혹은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기타 기관에서 정기급여를 받는 필자는 10만원의 계재비를 납부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 사실을 계재 논문에 표기할 경우 각 필자당 20만원씩의 계재비를 별도로 납부하며, 연구비 지원 사

실을 2건 이상 표기할 경우 전당 20만원씩을 납부한다. 단독 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공동논문 250매를 초과한 분량에 대한 게재비(원고지 1매당 1,000원)는 모든 게재 논문의 필자가 납부한다. 단,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2.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진행하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의결 자료를 비롯해서 원고접수부터 게재 여부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편집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를 정리, 보관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국인도학회의 관련 규정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원고의 내용이나 투고자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및 심사 진행상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13. 『인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이용권은 한국인도학회가 갖는다.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자신의 논문을 편집된 책이나 기타 출간물에 싣고자 할 때는 한국인도학회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자의 요청이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되면 동의한다.
14. 『인도연구』는 매년 2회, 6개월 간격으로 발간한다. 각 권 1호는 매년 2월 말일에 원고모집을 마감한 후 4월 30일에 발간하며, 2호는 매년 8월 31일에 원고모집을 마감한 후 10월 31일에 발간한다.
15. 『인도연구』에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연구윤리규정>과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원고의 접수 및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한국인도학회 연구윤리규정>

I.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인도연구』의 논문 투고 및 심사와 게재 등 편집과정 전반에서 편집위원회, 투고 논문의 필자(이하 연구자), 그리고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취할 조치를 명시한다. 이 규정을 통해 한국인도학회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의 내용을 널리 알려서, 한편으로는 편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견된 연구 부정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인도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 의무

이 규정이 발효된 후부터 『인도연구』 편집위원회는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양식을 함께 공지하며,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준수 서약에 서명해서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III. 연구 부정행위 사례와 용어 정의

1.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구상과 계획 및 수행, 자료수집, 저술과 출판 등 연구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위조, 변조와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가리킨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변조와 왜곡”은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첫째, 학술지나 단행본, 전자저널 등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하

거나 합성하는 행위, 둘째,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결과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셋째,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다른 연구결과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 인용이고 어떤 부분이 연구자의 주장인지를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중복게재”는 투고 논문이 첫째, 이미 다른 간행물로 출간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경우, 둘째,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투고 논문을 작성하는 전체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로 표시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공동저자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6. 연구자 자신이나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제보, 조사, 심의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행하자고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IV. 연구자의 연구윤리

1. 투고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간행물로 출간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편집과정에서 위 제III조에 규정된 위조, 변조와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이미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게재를 취소한다. 두 경우 모두 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처리를 규정한 제VII, VIII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다.
3. 연구자는 위 제III조에 규정된 연구 부정행위 사례들 외에도, 학술논문 작성에 관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공헌한 연구

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은 공동저자들이 상의해서 적절히 정한다.

5. 연구 수행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결과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을 모두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명기할 것을 권고한다.
6. 연구자는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V.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국인도학회의 편집규정,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 소속기관, 직위, 성별, 연령, 사적인 관계 등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정해진 규정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 연구자 및 심사위원 관련 정보, 심사 진행과정 등에 관해 비밀을 지킨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다른 학술단체나 기관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논문을 접수하지 않는다. 다른 학술단체나 기관의 징계가 모두 완료된 후라면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 규정 제VII, VIII조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정리해서 보관한다.

VI.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1.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 심사를 의뢰받아 수락한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자신이 해당 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절 의사를 알린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의 특정한 학문적 입장이나 시각 등을 넘어 학술논문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며, 심사평을 쓸 때는 연구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한다. 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정이나 보완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한다.
3.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출간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이용하거나 인용할 수 없으며, 이는 그 논문이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필자를 심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이 의뢰받은 논문에서 위 제III조의 연구 부정행위 사례에 해당하는 점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VII.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심의와 의결 및 집행

1.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조사, 심의, 의결하고 의결 결과를 집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도연구』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인도연구』 편집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때 구성된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조치를 확정해서 한국인도학회 임원단에 보고한 후 징계를 실시할 때까지 활동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해 제보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발견한 내용에 대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제보하거나 지적한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또한 위원회의 조사,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징계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자의 익명성과 소명권을 비롯해 학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청하여 열린다. 회의를 요청할 때는 위원회 조사와 심의가 필요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때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4.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이 출석해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제보자나 해당 연구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제외시키며, 나머지 위원의 2/3와 과반수로 각각 심의, 의결한다.
5.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 예정 사항의 해당 연구자에게 심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소명을 요청하며, 위원회 심의에서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근거자료들과 더불어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함께 검토한다. 심의 사실을 통보받은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심의 중인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내용들은 모두 기록해서 보관한다.

VIII.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와 징계

제VII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 심의, 의결을 거쳐 연구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해서 실시한다. 연구윤리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서 아래의 3가지 징계조치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이 조치들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인도연구』 게재를 취소하고, 징계가 확정된 후로부터 5년 동안 『인도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인도학회에서 제명하고 『인도연구』 논문 투고를 영구히 금지한다.
2. 한국인도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하며, 아울러 한국인도학회원들에게 별도의 메일로 이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와 징계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해당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나 기관지, 책 등에 게재된 것이라면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처리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공식 통보는 이메일을 이용하되, 학회장과 연구윤리위원장 공동명의로 한다.
4.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 의결과 징계 등에 관련된 모든 근거자료와 회의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고, 최종결과를 한국인도학회 임원단에 공식 보고서로 보고한 후 결정된 징계 내용을 실시한다. 보고서에는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해당 연구자의 소명,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조사 및 심의 절차, 의결 내용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징계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IX. 부칙

1.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한국인도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른다.
3. 이 규정은 한국인도학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후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인도학회 투고규정>

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분량과 파일 양식>: 가능한 한 원고 전체의 분량이 단독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공동논문은 250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며, 분량을 초과할 경우 원고지 1매당 1,000원의 계재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외국인 필자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영어 원고 모두 한글(hwp)문서로 작성하되, 한글문서로 작성하기 힘든 문자(데바나가리 등)를 사용한 원고는 MS워드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2. <원고 구성>: 한국인 필자가 투고하는 한글 및 외국어 원고는 한글제목과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어제목, Abstract, Key Words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외국인 필자가 투고하는 외국어 원고는 한글제목, 국문요약, 주제어를 빼고, 영어제목, Contents, Abstract, Key Words, 본문, References 등을 갖춰야 한다.
 - 1) 제목과 목차, 필자의 이름 등은 첫 쪽에 적는다.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필자 이름에 각주를 달아 구체적으로 적고, 연구비 지원 사실은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적는다. 영어이름과 영어제목에도 각주를 달아 동일한 내용을 영어로 적는다. Abstract에 쓰는 필자의 영어이름은 성을 앞에 쓰고 쉼표를 찍은 후 이름을 아래 예와 같이 적는다.
예: "Park, In-Do", "Shah, Ghanshyam"
 - 2) <국문요약>에는 논문의 주요 내용과 논지를 포괄적이고 간명하게 요약하고, <주제어>에는 논문의 핵심 개념과 용어를 5~10개 정도 제시한다. 200자 원고지 5~10매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Abstract, Key Words는 국문요약, 주제어와 같은 내용의 영어로 작성하되, <참고문헌> 뒤에 새 쪽에 적는다. 심사를 통과해서 게재가 결정된 후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국문요약, 주제어,

Abstract, Key Words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문>은 새 쪽에서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번호는 “I, 1,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1)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하며, 원고지 1매 분량을 초과할 때는 본문 중에 넣도록 노력한다. 각주 번호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각주 내용은 본문 해당 쪽의 하단에 넣는다.

(2) <표>와 <그림>은 본문의 해당 위치에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를 매긴 후 표나 그림 아래에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며, 출처 표시 방식은 본문 중의 인용자료 표시 방식과 같다.

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새로운 쪽에 작성하며, 아래 III에 규정된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따라야 한다.

3. <필자의 익명성>: 논문 심사 때 필자의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졸고 000”, 혹은 “졸저 xxx”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한글-한자 사용>: 본문에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자는 괄호 안에 적는다.
예: “전(全) 인도”, “일체가 여여(如如)함”

5. <외래 용어>: 외래 용어의 경우, 본문에서 맨 처음 나올 때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은 후, 다음부터는 한글 번역어를 사용한다.

예: “종교공동체주의(communalism)”, “인교(Non Resident Indians)”

6. <외래어 한글 표기>: 산스크리트를 비롯한 인도어의 한글 표기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 가능한 한 현지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되 반드시 원고 전체에서 일관된 표기 방식을 사용한다.

7. <외국 인명과 지명>: 외국 인명과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을 참고하되, 가능한 한 현지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 중에 맨 처음 나올 때 한글로 발음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은 후, 다음부터는 한글 발음

을 적는다.

예: “간디(Gandhi)”,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뉴델리(New Delhi)”, “꼴까따(Kolkata)”, “첸나이(Chennai)”

8. <외국 기관, 단체 및 정당의 명칭>: 외국 기관, 국제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번역어가 있으면 이를 사용한다(예 1). 그렇지 않을 경우, 본문 중에 맨 처음 나올 때 필자의 한글 번역어를 적고 팔호 안에 원어를 적은 후, 다음부터는 한글 번역어를 사용한다(예 2). 편의상 약어를 사용할 때는, 맨 처음 나올 때 팔호 안에 원어와 약어를 적은 후 다음부터 약어를 사용한다(예 3).

예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예 2: “인도국민의회당(Indian National Congress)은 독립 후 치러진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인도국민의회당이...”

예 3: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은 종교공동체주의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BJP에 대항하여...”

9. <출전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전을 표시할 때는 아래 II에 규정된 출전 표시 요령에 따라야 하며, 완전한 문헌정보는 <참고문헌>에 적는다.

II. 본문과 각주의 인용자료 출전 표시 요령

1.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전을 표시할 때는, 해당 부분의 팔호 안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연도, 쪽수 등의 정보만을 적는다. 형식은 아래의 예에 제시된 것처럼 (저자 출판연도, 쪽수)이며, 구체적인 경우들은 아래 3번의 사례들을 참조해서 작성한다.

예: “(박인도 1988, 27)”, “(Guha 1983, 55–57)”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1번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며, “같은 글”, “앞의 책”, “ibid.”, “op. cit.”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출전 표시 사례들

1) 저자명이 문장 속에 나오는 경우, 팔호 안에 출판연도와 쪽수를 적는다. 외국 저자는 한글로 성을 적은 후 팔호 안에 원어이름과 출판연도, 쪽수를 적는다.

예: “그런데 박인도(1988, 27)는...”, “또한 구하(Guha 1983, 55–57)는...”

2) 저자명이 문장 속에 나오지 않는 경우,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연도, 쪽수를 팔호 안에 적는다.

예: “...(박인도 1988, 27) ...”, “...(Guha 1983, 55–57) ...”

3) 쪽수는 출판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한 칸을 뗀 후 숫자를 적는다.

예: “(박인도 1988, 27)”, “(Guha 1983, 55–57)”

4) 공동저자가 2명일 때는 공동저자를 모두 적으며, 이때 저자들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을 적는 순서는 <참고문헌>에 실린 해당 자료와 같아야 한다. 공동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를 적지만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성만 적고(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 한 칸을 뗀 다음 “외” 혹은 “et al.”로 표시한다. 단, <참고문헌>의 해당 자료에는 공동저자들을 모두 적는다.

예: “...(박인도, 김불교 1990, 35)”, “...(Shah et al. 2006, 109)”

5) 한 팔호 안에 여러 인용자료들을 언급할 경우 혹은 한 자료의 여러 쪽들에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이때 한글 성명(가나다순)을 먼저 적고 외국 성(알파벳순)을 적는다.

예: “...(박인도 1988, 27; 서남아 1997, 77; Guha 1983, 55–57; Shah et al. 2006, 109; 208; 277)”

6) 다른 자료에서 재인용할 경우, 원래 자료의 정보를 적은 후 재인용한 자료와 재인용 사실을 적는다. <참고문헌>에는 원래 자료의 서지정보도 적는다.

예: “...(Guha 1983, 55–57. 박인도 1988, 27에서 재인용)”

7) 한글 번역서를 인용할 때는 한글로 표기된 외국인 저자의 성과 출판연도, 쪽수를 적는다. 출판연도는 한글 번역본의 출판연도만 적거나, 혹은 팔호 안에 원저의 출판연도를 함께 적을 수도 있다.

예: "...(네루 1981, 35)", "...(아난드 1985(1935), 77)"

8)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에 실린 무기명 기사를 인용할 때는 지명과 발행연도/월/일(월간지의 경우 발행연도/월), 쪽수를 팔호 안에 적는다.

예: "...(『중앙일보』 1993/04/08, 5)", "...(『신동아』 1993/02, 233)"

9) 출판예정인 원고를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나 “forthcoming”으로 적는다. 인용한 원래의 자료 자체에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를 적는 자리에 “연도미상” 혹은 “n. d.”로 표시한다.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이라고 적는다.

예: "...(서남아 출판예정, 32)", "...(Srinivas forthcoming, 56)", "...(박인도 연도미상, 77)", "...(Coleman n. d., 88)", "...(김불교 2002 미간행, 15)"

10) 기관 저자일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을 적는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22)"

11) 웹사이트 자료를 인용할 때도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저자 출판년도) 정보만 적고 온전한 서지정보와 사이트 주소, 접속일 등은 참고문헌에 적는다. 단, 본문에서 사이트 주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각주로 처리한다.

III.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쪽을 바꾸어 적는다.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자료의 문헌정보를 밝혀야 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자료들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인도-유럽어 문헌, 기타 언어 문헌(힌디, 산스크리뜨, 일본어, 중국어 등) 순서에

따라 적는다. 원전자료를 별도로 적을 경우에는 2차자료에 앞서 적으며, 형식은 본 투고규정과 해당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절충한다. 웹사이트자료는 맨 뒤에 적는다.

3. 논문과 책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팔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저자명은 성, 이름 순서로 적되, 로마자로 표기된 경우에는 성 다음에 첨표를 찍어 구분한다.
4.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출간된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원고 본문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한다.
5. 문헌정보는 아래의 1) 일반적 원칙과 2) 구체적 사례들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일반적 원칙

- (1) 문헌정보에는 저자의 성명과 출판연도, 문헌의 제목 등이 들어가야만 한다. 저서의 경우에는 출판지와 출판사를 추가로 적는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이름과 권-호, 게재 쪽수 등을 추가로 적되, 출판지와 출판사는 적지 않는다.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은 편집자 성명과 출판연도, 책 제목, 출판지와 출판사 등을 추가로 적는다.
- (2) 한글로 번역된 책이나 논문은 한글로 표기된 원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며, 원래의 출판연도를 밝히고자 할 때는 번역본 출판연도 뒤의 팔호 안에 적는다. 원저의 문헌정보를 모두 밝히고자 할 때는 번역본의 문헌정보 뒤에 팔호를 치고 적는다.
- (3) 한글 및 외국어 논문과 기사의 제목은 겹따옴표로 묶는다 (예 1). 한글, 일본어, 중국어 저서와 학술지, 신문, 잡지 등의 제목은 꺽쇠로 묶고(예 2), 인도-유럽어 저서와 학술지, 신문, 잡지 등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예 3).

예 1: “신경제정책과 인도 소비문화의 변화”,

“The Brahmanical View of Caste”

예 2: 『인도 사회의 변화와 전망』, 『인도연구』, 『중앙일보』, 『신동아』

예 3: *Social Change in Modern India,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The Times of India, Seminar*
 (4) 쪽수를 적을 때는 숫자만 적는다.

2) 구체적 사례들

(1) 저서

① 저자가 1명일 때:

박인도 1988. 『인도 사회의 변화와 전망』. 서울: 한울사.

Guha, Ranajit 1983. *Elementary Aspects of Peasant Insurgency in Colonial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② 저자가 2명 이상일 때: <참고문헌>에는 공동저자 모두를 적는다. 공동저자를 적는 순서는 참고한 자료에 적힌 순서를 그대로 따르되, 외국인 공동저자들의 경우 제1저자는 성-이름순으로 적고 그 다음 저자부터는 이름-성순으로 적는다. 단, 책 표지에 원래 “서남아 외” 혹은 “Shah et al.” 등으로 적힌 경우에는 그대로 적을 수도 있다.

박인도, 서남아, 김불교 1995. 『인도와 한반도의 문화교류』. 서울: 철학사.

서남아 외 1995. 『인도 문화의 전통과 변화』. 서울: 철학사.
 Shah, Ghanshyam, Harsh Mander, Sukhadeo Thorat, Satish Deshpande, Amita Baviskar 2006. *Untouchability in Rural India*. New Delhi: Sage Publications.

③ 한글 번역본:

네루, 자와할랄 지음, 김종철 옮김 1981. 『인도의 발견』. 서울: 한길사.

아난드, M. R. 지음, 정혜경 옮김 1985(1935). 『어느 천민의 하루』. 서울: 한길사. (Anand, M. R. 1935. *Untouchable*. New Delhi: Arnold-Heinemann Publishers (India) Pvt. Ltd.)

자다브, 나렌드라 지음, 강수정 옮김 2007(2002). 『신도 버린 사람들』. 서울: 김영사.

(2) 학위논문

김불교 1992. “불교를 통한 인도 문화의 영향: 고려시대 전반 기를 중심으로”, 집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hatia, Bela 2000. “The Naxalite Movement in Central Bihar”, Unpublished Ph. D. Thesis,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데, 만약 논문의 원래 출간연도와 책의 출판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책 출판연도 뒤의 괄호 안에 논문의 원래 출간연도를 적을 수도 있다.

①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박인도 1991. “인도 사회 변화에서 카스트의 역할”, 김불교, 박인도, 서남아 편 1991, 『인도의 사회와 문화 변동』, 서울: 한울사, 211–250.

Madan, T. N. 1996(1965). “Partition of the Household”, In Jayaram, N. and Satish Saberwal, eds., 1996, *Social Conflict*,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35–50.

②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서남아 1998. “나가(Naga) 부족의 종교의례”, 『인도 동북부의 부족민들』, 서울: 철학사, 235–266.

(4) 학회지, 월간지, 계간지 등에 게재된 논문과 기명 기사

김불교 2003. “해상무역로를 통한 인도 불교의 해외 전파”, 『계간 종교문화』 봄호, 101–122.

박인도 2007. “경제자유화 정책 이후 인도 사회의 변화 양상”, 『인도연구』 제12권 1호, 137–164.

Brara, Rita 1994. “Kinship and the Political Order”,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New Series)* 28(2), 203–241.

Khare, Harish 2003. “After Gujarat”, *Seminar* 521, 30–33.

(5)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칼럼

서남아 2005. “인도 경제개혁의 교훈”, 『중앙일보』
2005/04/08, 5.

Beteille, Andre 2000. “Will the BJP-led Coalition Hold?”,
The Times of India 2000/04/22, 23.

(6) 일간지, 주간지의 무기명 기사와 칼럼

『중앙일보』 2005/04/08. “인도 경제성장의 명과 암”.
The Times of India 2000/04/22. “BJP and Hindu Fundamentalism”.

(7) 원전자료와 약호

Shastri, S. D., ed., 1968. *Pramāṇavārttika of Acharya of Dharmakīrti with the Commentary Vṛtti of Acharya Manorathanandin*. Varanasi: Baudha Bharati.

Steinkellner, Ernst, ed., 2007. *Dharmakīrti's Pramāṇaviniścaya* (Chapters 1 and 2). Beijing-Vienna: China Tibetology Publishing Hous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Cs Agnivesa's *Caraka Saṃhitā* Vol. I. 1983 (trans. by Sharma, Ram Karan & Bhagwan Dash). Varanasi: Chowkhamba Sanskrit Series Office.

PVin *Dharmakīrti's Pramāṇaviniścaya*. 2007 (ed. by Steinkellner, Ernst).

TSP Kamalaśila's *Tattvasaṅgrahapañjikā*. 1968 (ed. by Shastri, S. D.).

(8) 웹사이트

다음(Daum) 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인도대법원 판례 <http://judis.nic.in/supremecourt/chejudis.asp>
(2016/08/30 접속)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14. “Indi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Government of India 홈페이지. <http://mhrd.gov.in/statist>. (2016/04/08 접속)